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989

제출연월일: 2024. 7. 19.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 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 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1. 일용근로자
-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 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보험연도에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요건을 갖춘 사업

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
	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
	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
	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u>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u>
	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
	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
	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
	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
	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
	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
	액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
	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
	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
	<u>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u>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 격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 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 의 비율
-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 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 여 금액의 비율
-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 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 다.
- <u>1. 일용근로자</u>
-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

 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

 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

 술인
-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u>람</u>

-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

 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

 무제공자
- 6.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